

	전담영역별전임교원직종전환임용 규정	규정번호	3-3-22
		제정일자	2024.03.01.
		개정일자	
		개정차수	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전담영역별전임교원직종전환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전담영역별전임교원직종전환임용(이하“직종전환임용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전담영역별 전임교원 직종 간의 전환 임용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대학은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의전담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중점교원으로서의 직종전환임용을 할 수 있다.

② 신청 횟수는 해당 직종에 재직 중 3회까지로 한다.

③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평가 대상 기간은 현 재직 직종의 최근 3년 이내로 한다.

1. 신청일 기준 해당 직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
2. 박사수료 이상자
3. 강의항상평가 평균 점수가 4.0 이상인 자
4. 업적평가 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

제4조(신청제한)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심의 중인 교원은 직종전환임용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5조(제출서류) 직종전환임용 신청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직종전환 임용 심사 신청서
2. 소속 학과(부) 의견서(소속 학과(부) 전임교원 2/3 이상의 동의 또는 부서장의 동의 포함)
3. 자기성과기술서(학과(부) 및 대학발전 기여 실적)

제6조(심사위원회) ① 총장은 직종전환임용 심사를 위하여 “직종전환임용심사위원회”(이하 ‘심사위원회’라 한다.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(교무처장, 입학홍보협력처장, 학생성공처장, 산학협력처장, 전략기획처장)과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제7조(심사절차) 직종전환임용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고, 심사절차는 [별표1]에 따르며 항목별 평가배점은 [별표2]와 같다.

제8조(서류심사) ① 서류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
② 학과(부서) 및 대학발전기여실적 평가 결과는 심사위원의 평가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(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)로 산출한다.

③ 평가 결과 40점 이상자(50점 만점)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한다.

제9조(면접심사) ① 면접심사는 총장, 심사위원회, 학과(부)장(부서장)이 심사한다.

② 면접심사는 학과(부서)발전계획, 대학발전계획, 기독교 교육자로서의 헌신 및 자질을 평가한다.

③ 평가 결과는 심사위원의 평가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(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)로 산출한다.

④ 면접심사 평가 결과 종합점수 40점 이상자(50점 만점)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10조(임용제청) ①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청 대상자에 대한 임용동의여부를 심의한다.

② 총장은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에 직종전

환임용을 제청한다.

제11조(직급 및 보수) ① 직종전환임용 직급은 조교수로 하고,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 규정에 의한다.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